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신원인수인(보호자) 권리

1.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2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3.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4.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단, 신원인수인에게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.

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1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5.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. 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6.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,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,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, 각종 프로그램참석의무,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,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.

엔젤재가노인복지센터

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41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, 계약 목적, 월 이용료, 기타 비용부담액, 계약의 해제,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계약 목적 및 대상자 : 엔젤재가노인복지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 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
2. 계약기간

가.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나.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,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 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 조하여야 한다.

다. 센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한다.

라.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 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
마.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 를 즉시 반영한다.

3. 계약해제

가.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나.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장이 정한다. 다. 센터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.

1)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2)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3)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센터장은 이용자에게 서 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라.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